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 수정(안 제3조 1항)

생물테러 주무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 수정(안 제13조 2항 1호)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위원은 공항·항만에 상주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장이었으나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함

다. 생물테러대응지원본부 설치·운영주체 변경(안 제16조 1항)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중 생물테러사건 발생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본부를 구성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테러센터·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u>보건복지부장관</u> ,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 ----- ----- ----- <u>질병관리청장</u> ----- ----- ----- ----- ----- ----- -----.
제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① (생략) ② (생략)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u>보건복지부</u>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기관의 장	제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u>질병관리청</u> ----- ----- ----- -----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u>보건복지부장관</u> , 환경부장관 및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u>질병관리청장</u> ,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화생방 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한다. 1. <u>보건복지부장관</u>: 생물테러 대응 분야	----- ----- ----- ----- -----. 1. <u>질병관리청장</u>: 생물테러 대응 분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조정실	
연 락 처	02-2202-8611